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상시모집공고

소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소공인 해외매장 입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 o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상시모집 공고로 신청한 달에 서류 미제출 등 사유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달 재신청하여야합니다.
- 선정 후 필수조건
-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위한 베트남 수출 인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하며, 진행 간 발생되는 절차(재고배송, 해외인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기획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정을 통해 입점하여야 합니다.
- ※ 위 '선정 후 필수조건' 미이행시 선정 취소되오니 조건을 필히 확인 후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인증비용 신청 시, 유의사항(자부담금, 책임자 선정 등)을 필수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해외 오프라인 매장 개점·운영을 통해 상품홍보 및 인지도 제고, 수익창출 등 소공인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 필요
- 나. 지원규모 : H/B*제조 소공인 50개사 내외
 - * 뷰티제품군 : 스킨케어, 마스크팩, 클렌징, 선케어, 메이크업, 미용소품, 더모코스메틱,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수 및 디퓨져, 네일제품류 등
 - ** 헬스&푸드군 : 건강식품(비타민, 영양제 등), 푸드(이너뷰티/식단관리 등), 구강용품 등
- 다. 모집기간 : 지원규모 달성시까지 상시모집
-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처 : https://www.sbiz24.kr)
- 마. 지원내용: 해외 오프라인 매장입점 지원, 인증지원, 기타지원(홍보·마케팅, e커머스 기획전, 물류 등)

바.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공단)	•	사업신청접수 (공단)	*	평가 및 선정 (수출전문가)	*	인증절차 진행 및 온라인 입점 (수행업체)	•	오프라인매장 입점 (수행업체)
2월		매월 셋째주 금		매월 넷째주 수		2월~12월 중		2~12월 중

2. 세부지원내용

가. 오프라인 매장

- (오프라인 매장입점) 베트남 현지 소공인 전용 오프라인 매장 입점, 프로모션, 홍보 및 마케팅, 판촉 등 연계지원
 - · (매장개요) 뷰티·헬스제품 제조 소공인 전용 오프라인 매장 오픈 (DooK'N-DooK'N, '24.8.29)
 - · (매장위치) 하노이 빈컴메가몰 로얄시티 B2층



- (인증지원) 베트남 수입인증을 획득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국비 80%, 자부담금 20%)를 국비 최대 200만원 지원 (한도 내 최대 2개 제품까지 지원, 이외 국비지원 불가)
 - (진행절차) 책임자* 선정 및 인증진행 후 정산서류 제출 → 사후정산
 - * 책임자(RP) : 베트남 내 제품 수입·유통·판매·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현지법인 또는 개인으로 의약청 승인 등 베트남 수출을 위해 필수로 지정해야함

※ 진행 시 유의사항 ※

- 책임자 선정 시, 공단이 선정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타 책임자** 진행 시 두근두근 매장 내 입점 및 판매할 수 있는 확약 필요
- 정부지원 사업 중 「'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등 을 통해 인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인증비용 중복지원 불가하며, 추후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4년 해외 오프라인 매장입점」 선정 소공인 중 인증비용 지원 희망하는 경우, '25년 사업 신청 후 평가 및 재선정 필요
- 선정 이후 베트남 수입인증 획득(선정통보 후 1년 이내)은 필수이며, 미획득 시 선정 취소
- 나. (기타지원) 해외 e커머스 內 소공인 전용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마케팅 및 판촉지원, 이벤트, 물류서비스 등 예정

3.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H/B*(헬스 및 뷰티)제품 제조 소공인

나.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25.2.10.)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o 공고 마감일 현재「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o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지원규모 달성시까지 상시모집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
사업조회	<u>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u>) → 로그인
시티고되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해외(베트남) 오프라인
	매장입점 소공인 모집공고"선택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사항 1644-5302

다. 신청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1	► <서식1> 수행계획서(8장이내)			
	2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필수 서류	3	2개 中 택 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24년도 서류발급 불가한 경우 23년도 서류로 대체 (단, 공고시작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 서 제출가능)			
* 마		기 <mark>데이터 미동의 시 아래(4~7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mark> 터 동의 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 시 제출란 없음)			
	4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마이데이터	6	3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中▶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택 1▶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미동의 시 필수서류	7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는 신청단계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 라.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rightarrow ②개인정보 동의 \rightarrow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u>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u> 후 본인 인증 필수
 -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 회원가입 필수
-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5.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사업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 (신청자→공단)	선정평가(서면평가) (공단)	*	선정 통보 (공단↔신청자)
~매월 셋째주 금	매월 넷째주 수		선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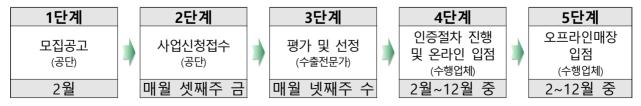
- 선정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평가항목에 따라 매달 말일 외부평가위원의 서면평가 진행(단, 필요에 따라 평가일정 변동가능)
 -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해당 월 평가대상에서 제외, 추후 신규신청 필요
- 선정통보 : 평가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후 결과 통보
 - * 선정이후 결격사유 등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 ** 단, 70점 미만 득점시 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처리

나. 평가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사업이해도 및 해외진출경험 등	30		
추진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	20		
제품역량	■제품경쟁력, 동남아 內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40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0		
* A				

6. 추진절차(안)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접수·문의처

가.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신청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1 1644-5302
사업문의	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전문기관	☎ 02-743-7306~7307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8. 유의사항

- 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확약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 다.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라. '선정 후 필수조건' 미이행시 선정 취소되오니 공고 첫페이지 유의 사항을 필히 확인 후 신청 필요
- 마. 입점 후 기타지원(P.3)에 대해서 지원품목 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서 식】사업신청서
- 【붙 임】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 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해외 오프라인매장』입점신청서

		업체명						나업자번호 인등록번호			
업체개요		대표자		성명			3	휴대폰번호	i		
				메일주	소						
	• • •			성명			3	휴대폰번호			
		담당	당자	메일주	소				 		
		주	소					개업년월			
				2022		20	23			2024	
ulla	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	출액				천\$			천\$		천\$	
제품 및 <i>경</i>		특징 대 쟁력 기		하여 1,000	0자 이내	되는 자사만의 : 작성. (시장성, <i>7</i> 외성 등 자사 제	 격경	쟁력, 품질	및	대표저 실시	
				1 (2) (1)						대표 제	품명
제	입점희망		구분(SKU) 제품명 1 ※ sku별 작성						<u> </u>	·격대	
품 개	제골	•	2 ※ 기재한 입점 희망 제품 중 최대 2개까지 인증비용 지원 가능								
요				게 년 <u>립 립</u> 명칭	70 711	<u> </u>	777 L	<u> </u>	<u> </u>	<u>~</u> 취득일자	
	ᅁᅎ	п.									
	인증 및 특허 현황										
						임자 등 있을 경우 제품관련 주요					
	수출0	력	•	<i>'',</i> 7 <u>D</u> C	- , , ,	<u> </u>		J ML	<u> </u>	<u>— 1-1</u>	,
11					•	주요 수출액 등		<i>Ⅱ★ⅠⅢ 7</i> ᢖᢧ = ਤ	HO TI =	토 <u>으 이</u> ઠ 미지	ᄌ비ᄼ사ᄑ
사 업	해외진 노력(한	변황)				환경분석(해외판 이지구축), 해외:				함 기반 사신	正川(3)舌
업 신 청 개	지원비 및	H경	**	사업을 신	!청하게 E	릴 이유, 사업목 <u>:</u>	표(목I	표 해외시경	당 및 =	록 <i>표 수출액) 밝</i>	및 지원항
개 요	기대로	ᇗ		목 세부격	계획, 기대 ₋	효과 등을 포함	か タ :	작성			
_	–			. –		d」에 참여하고	. –	l청합니다	. 제출	된 서류내용	에 허위
사실	실이 있 .	을 경	!우 선	성취소 분	=	에 동의합니디)25년 월		일			
					20		E자 :	_		(인)	
	–	. ~ '		. ㅜ! ÷ =	1 E L A'					,	
ᄼ	_상금	늘인.	시싱	신응성	ㅎ난 이	사장 귀히	-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Ⅱ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②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 하는지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 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 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 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지저 2개 사이어드이 초 매초애우 20큰 나는 그애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나이기가이 12개위이 나이어드이 초 메츠애의 나이기가이		
사업기간이 12개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	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이상인 경우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미만인 경우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 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

❷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	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7	H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2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20. 3. 2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4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상시 근 로 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 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 지 않게 된 경우
-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 은 제외하고 산정
 -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 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붙임2

(해당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3]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월일업체명:(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